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587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(안) 공람·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 10. 26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 3. 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 3. 27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공람 공고합니다.
2.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을 통해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8월 7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공람내용

- 공람사유 :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20조 제1항 제3호
 -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람
- ※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일 : 2014. 3. 27.
- 해제대상 정비구역(안)

구역명	세부구역수	면 적(㎡)	구역명	세부구역수	면 적(㎡)
3구역	2	8,292.50	6-2구역	47	57,407.10
5구역	9	31,711.50	6-3구역	5	2,293.2
6-1구역	32	44,390.20	6-4구역	22	28,400.80

※ 2019. 3. 26.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된 구역 제외

- 공람기간 : 2019. 8. 7. ~ 2019. 9. 6.
 -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도심재생과
 -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
2. 본 안은 주민공람, 구의회의견청취,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,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도심재생과 (☎ 3396-5753~5758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〇-〇-〇구역 공람 의견서

구역명	세운재정비촉진지구 〇-〇-〇구역			
대상 물건지	건물			
	토지			
의견 제출인	성명		주민등록 번호	— *****
	주소		전화번호	
○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20조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 의견 (택일하여 동그라미에 √ 표시) ① 구역 해제 의견 ② 구역 연장 의견				
○ 기타 의견 (자유 기재)				